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2. 18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이귀웅)

□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(법률 제9569호, 2009. 4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한편,
- 「부천시새주소위원회」를 「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」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함.(안 제8조)
- 나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.(안

제19조)

- 도로명주소안내판: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
- 도로명주소안내도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

다.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.(안 제25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천시 도로명주소
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도로명주소
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
한 법률」”을 “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”를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
설치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
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(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
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
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
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

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.

제8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원인자부담)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 세입·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.

제4장과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목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각각 “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목 중 “도로명”을 “도로명주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“도로명사업담당부서”를 각각 “도로명주소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장의 제목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축물 등”을 “건물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

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, 수량 및 위치
2. 계약 기간 및 금액
3.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4.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
5.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6.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제목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7장의 제명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안내판 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광고의 범위)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·제3항 중 “안내표지판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새주소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”를 “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”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”을 “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

제25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도로명사업담당과장”를 “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

별표 1·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·별지 제8호서식

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25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(법률 제9569호, 2009. 4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한편,
- 「부천시새주소위원회」를 「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」로 하는 등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함.(안 제8조)
- 나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.(안 제19조)
 - 도로명주소안내판: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
 - 도로명주소안내도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
- 다. 부천시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.(안 제25조)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”를 “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도로명주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”를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(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

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
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.

제8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원인자부담)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 세입·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.

제4장과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목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각각 “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목 중 “도로명”을 “도로명주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“도로명사업담당부서”를 각각 “도로명주소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장의 제목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축물 등”을 “건물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

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, 수량 및 위치
2. 계약 기간 및 금액
3.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4.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
5.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6.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제목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시설”로 한다.

제7장의 제명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안내판 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광고의 범위)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

제20조제2항·제3항 중 “안내표지판”을 각각 “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새주소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”를 “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”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”을 “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

제25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도로명사업담당과장”를 “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

별표 1·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·별지 제8호서식

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</p>	<p>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「<u>도로명주소법</u>」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「<u>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<u>도로명주소</u> 등에 관하여 「<u>도로명주소법</u>」</p> <p>-----</p>
<p><u>제2장 도로명의 변경</u></p>	<p><삭 제></p>
<p>제3조(도로명의 변경요건)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 3년이 지난 후 도로명 변경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(이하 “주소사용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)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</p> <p>제4조(도로명의 변경)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의견의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(복수안)</p> <p>2. 해당 도로명의 변경신청 사유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3.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범위, 의견제출의 방법 및 기간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부천시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변경신청된 도로명의 연혁, 제정·변경추진 사유 2. 변경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의 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.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.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(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만을 말한다)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
<p>⑤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,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자료를 정리하고,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)</p> <p>① 시장은 영 제21조 및 이 조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,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·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 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.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.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.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하였으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물로 서면고지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고지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</p> <p>제6조(건물번호판의 규격)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 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대로, 노(路)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·세로 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 상, 면적은 1,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, 길에 접한 건축 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·세 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,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(숫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 ·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 미터 이상(숫자 “1”의 가로길이 는 예외로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3.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 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 다.</p>	<p>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 등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·설치)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의 설치 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만을 말한다),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(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)</p>	<p>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(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 건물교부판</p>

현행	개정안
<p>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설치완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부천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의2(원인자부담) 시장은 별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 세입·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.</p>
<p>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</p>	<p><삭제></p>
<p>제9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별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시행자”라 한다)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준공 예정일(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·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) 90일 이전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인가서 2. 축척 3,000분의 1 이상의 사업계획도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,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.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, 위치 및 수량 3. 도로명시설의 설치 기간 및 비용 4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

현행	개정안
<p>④ 제3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자체 제작·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.</p>	
<p>제10조(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)</p>	<p><삭 제></p>
<p>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설치완료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판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
<p>②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(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·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.</p>	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)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(노선명)은 <u>도로명사업</u>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도로명사업</u>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(노선명)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<u>법</u>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)----- ----- <u>법</u> -----<u>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<u>도로명</u> 관련 자료의 통보)</p> <p>① 시의 도로·건축물·국토이용계획·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<u>도로명사업담당부서</u>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도로명사업담당부서</u>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 관련 자료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<u>도로명주소</u> 관련 자료의 통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도로명주소담당부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도로명주소담당부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도로명기본도의 작성)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·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철도, 호수, 하천, 공원, 교량 등의 배경자료와 건축물군, 교차로, 지하철·철도역사, 관광지 등의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14조(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)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,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·변경사유 및 부여·변경일자 등을 부천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6장 <u>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</u></p>	<p>제6장 <u>도로명주소시설</u> ----- -----</p>
<p>제15조(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)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<u>도로명시설</u>을 일제조사한 결과, 훼손, 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·설치하도록 <u>건축물</u>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·망실된 <u>도로명시설</u>의 재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) ① ----- ----- <u>도로명주소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<u>도로명주소시설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로명시설의 종류, 수량 및 위치 2. 계약 기간 및 금액 3.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.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계획 5. 도로명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.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<p>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, 수량 및 위치 2. 계약 기간 및 금액 3.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.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 5.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.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<p>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도로명시설의 점검)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) ① ----- ----- ----- 도로명주소시설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도로명주소시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수탁자의 지도·감독)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수탁자의 지도·감독) ----- -----도로명주소시설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</p>	<p>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----- -----</p>
<p>제19조(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)</p> <p>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</p>	<p>제19조(광고의 범위)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도로명주소안내도(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종류 및 제작수량</p> <p>3. 안내표지판의 종류, 제작수량, 설치위치 및 규격</p> <p>4. 광고사업 참가자격</p> <p>5. 광고사업 신청 장소, 기간 및 제2항의 제출서류</p> <p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·구성계획</p> <p>2.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 계획</p> <p>3. 안내표지판의 규격, 재질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</p> <p>4.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부천시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) (생 략)</p> <p>1.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여객자동차터미널, 여객터미널,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<u>새주소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안내시설의 설치</u></p> <p>2.~4.(생 략)</p> <p>제9장 <u>부천시새주소위원회 등</u></p>	<p>제23조(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<u>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</u></p> <p>2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장 <u>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</u></p>
<p>제2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영</p> <p><u>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새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1. <u>도로명의 부여·변경(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·위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5.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제2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<u>위원회</u>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<u>도로명사업 관계 공무원</u></p> <p>2. <u>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④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1. <u>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</u></p> <p>2. <u>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</u></p> <p>3. <u>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</u></p> <p>4. <u>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</u></p>	<p>제2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<u>법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</u></p> <p>2. <u>도로명주소사업</u> ----- 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u></p> <p>2. <u>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</u></p> <p>3. <u>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</u></p> <p>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13 300 384 338"><신 설></p> <p data-bbox="197 533 798 752">제2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도로명사업담당과장이 된다.</u></p> <p data-bbox="233 770 432 808">② (생 략)</p> <p data-bbox="197 831 798 992">제28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data-bbox="233 1010 798 1406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회의일시 및 장소</u> 2. <u>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</u> 3. <u>토의 및 진행사항</u> 4. <u>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</u> 5. <u>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 data-bbox="839 300 1390 517">⑥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.</p> <p data-bbox="807 533 1390 752">제27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<u>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의 장</u> ----.</p> <p data-bbox="839 770 1134 808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07 831 1390 992">제28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data-bbox="839 1010 1390 1294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회의일시 및 장소</u> 2. <u>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</u> 3. <u>토의 및 심의결과</u> 4. <u>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</u>

〈관계 법령발췌서〉

○ 도로명주소법

제8조의3 (도로명주소대장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
2.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·변경·폐지
3.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
4.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·정비·철거
5.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, 기재 내용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·관리되어야 한다.

제8조의4 (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 (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<개정 2009.4.1>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1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>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>

제17조 (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<개정 2009.4.1>)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·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·유지관리·손해배상공제가입·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1>

제22조의2 (도로명주소위원회) ① 도로명의 부여·변경,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, 시·도에 시·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
3.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
4.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5.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(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
6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시·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·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시·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로명의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2.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·관리·위탁에 관한 사항
3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

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시·도 및 시·군·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9.4.1]

○ 도로명주소법 시행령

제7조의3 (도로명의 변경 절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: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

2.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: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

3. 그 밖의 경우: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

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 또는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·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현재의 도로명

2.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

3. 도로명의 변경 사유

4.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·끝지점·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

5.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,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

6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도로명의 내력,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

2.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

3.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

4.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

5.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·끝지점·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

6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, 변경 내용 및 절차(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(이하 "후보도로명"이라 한다)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(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)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⑧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(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)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,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⑨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⑩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.

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

하는 경우

2.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,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 (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)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
2. 도로선
3.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
4. 도로명
5. 기초번호와 기초간격
6. 필지 경계와 지번
7. 건물등의 위치 및 형태
8. 건물번호와 그 주된 출입구
9. 관공서·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이름
10. 철도, 호수, 하천, 공원, 다리 등의 배경자료
11.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의2 (원인자 부담)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·허가·승인을 그 인가·허가·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(이하 "설치계획서"라 한다)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(이하 이 조에서 "설치비"라 한다)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.

1.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
2. 개발사업의 지역, 내용 및 계획도
3.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(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,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)
4. 도로명 계획도
5. 비용부담계획(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)
6.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(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·기초번호·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)

② 개발사업의 인가·허가·승인권자는 그 인가·허가·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·허가·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.

④ 도로·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·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(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)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·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·준공을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(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. 이하 "수정계획서"라 한다)
2.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·기초번호·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

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.

1. 조달 단가
 2.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
-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·군·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1. 설치계획서
2. 수정계획서

3.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
4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.

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(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)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 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.

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

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(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)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(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)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

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.

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
2.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

제17조 (유지관리의 위탁 등)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18조 (광고)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: 소유자의 이름, 주소, 업소명, 전화번호,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
2.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: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

②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·설치·배포하기 전에,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·설치·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 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)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(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·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)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,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 (도로구간등의 고시) ① 법 제18조제1항,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·변경·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도로명·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

가.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나.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

다.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

라.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마. 도로구간등의 설정·부여 고시일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도로명·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

가. 변경 전·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나. 변경 전·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

다. 변경 전·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

라.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마.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

가.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나. 변경 전·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

다.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

라.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마.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

가. 변경 전·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나.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

다.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

라.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

마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

가.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나. 변경 전·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

다.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

라.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

마.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

바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. 도로명·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

가.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

나.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

다.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

라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·도시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, 시·도시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·변경·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·변경·철거하여야 한다.

제22조 (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 사항)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지·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종전의 주소

2.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

3. 도로명주소의 부여일(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)과 그 부여 사유

4.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

5.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(10일 이상으로 한다)에 관한 사항(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)

6.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7.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

8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·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.

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·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명주소의 변경일(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)과 그 변경 사유

2. 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·제7호 및 제8호의 사항

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·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·제2호·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.

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·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도로명주소

2.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

3.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 (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 절차)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(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)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.

1.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·군·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
2.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

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·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)·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·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·고시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24조 (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 절차) ① 시장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고지·고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, 해당 시·군·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·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·제5항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25조 (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·고시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.

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지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·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